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0
----------	------

제출년월일 : 2014. 3.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감면항목 신설, 점용료 분납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적합하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정기준 항목 일부 수정(안 제3조)

- 점용료산정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 (도로부지제외)로 개정
-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표시면적 표시부분 가장 큰 1개의 면적기준으로 산정

나. 소액부징수 예외 조항 추가(안 제5조)

- 공익사업기관 감면(50%)전 점용료가 5천원 이상의 경우 부과

다. 감면 규정 신설(안 제6조)

-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출입로 주택면적비율 면제
- 소상공인 영업소의 진출입로 10% 감면

라. 분할납부 가능 항목 신설(안 제8조)

- 연간점용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 분할 부과가능

마. 대리(위임)자 고지 납부 규정 신설(안 제9조)

- 건물소유자 2인 이상의 경우 관리인 또는 위임한 대리자에게 고지가능

바. 점용료 산정 기준표 수정 [별표1]

- 주유소 주차장 등 진출입로 점용료율 토지가격에 2.5%에서 2%로 20%인하

-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공사장 진출입로 등 산정기준 추가

사. 점용료 조정산식 수정 [별표2]

- 조정산식(산출점용료 증가율에 따른 조정)단순화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2014. 2. 14 ~ 3. 6)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접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산술평균”을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단위 당 점용료”를 “점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사유로 2”를 “사유로 들”로, “관직경”을 “관 지름”으로,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제6조제1항제6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한다”를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 후단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당해연”을 “해당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를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규정”을 “해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 관한 적용례) 별표 1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 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 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 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2. 수도관, 전 력구 등 지 하매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m ²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 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 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 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 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 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3. 간판(돌출간 판은 제외한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일시 설치한 것(1개 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판을 포함한 다), 사설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다)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 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기타			20,700
	4. 주유소·주 차장·여객자 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 물적치장·휴 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 하 실 (「건축 법」 제2 조제1항제 2호의 건 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 1호에 따 라 설치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그 밖에 이와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유사한 것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m ²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u>제19조</u>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점용료의 부과 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u>기타</u>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u>기타</u>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생략)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의 가격은 <u>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u>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u>제19조에 따라</u>----- ----- ----- -----.</p> <p>제2조(점용료의 부과 대상) ----- ----- ----- ----- ----- ----- <u>그 밖</u>----- ----- ----- <u>그 밖</u>----- -----.</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u>----- -----. ----- <u>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 산술평균가격</u>----- ---.</p>

현 행	개 정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 면적 등이 0.5제곱미터 미만 또는 0.5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 미만 또는 0.5미터 이상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 또는 1미터로 계산한다.</u>	<삭 제>
⑤ <u>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u>	⑤ <u>점용료</u> ----- ----- -----.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u>점용물 중 전기관 ·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u>	⑧ ----- ----- ----- ----- <u>사유로 둘</u> ----- ----- <u>관 지</u> <u>를</u> ----- ----- ----- <u>지를</u> --- ----.
⑨ <u>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u>	⑨ ----- ----- <u>해</u> <u>당</u> ----- -----

현 행	개 정 안
름으로 한다. <u><신 설></u>	-----. ⑩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u>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u>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u></u>	제4조(점용료의 조정) ----- -- <u>제3조에 따라</u> ----- ----- ----- <u>해당연도</u> ----- ----- -----.
제5조(소액부 징수) <u>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u>	제5조(소액부 징수) <u>제3조에 따른</u> ----- ----- -----. 다만, <u>제6조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u>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 ----- ----- ----- ----- ----- -----

현 행	개 정 안
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 <u>제49조에 따라</u>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 학교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u>한국농촌공사</u> (농어촌 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 ----- <u>한국농어촌공사</u> ----- -----
7.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7. ----- <u>그 밖의</u> ----- ----- ----- ----- ----- -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② --- <u>그 밖의</u>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 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	③ ----- ----- -----

현 행	개 정 안
<p>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르며, 납부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p>	<p><u>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u></p> <p>② ----- ----- <u>해당</u>----- ----- ----- ----- ----- -----.</p>

관 계 법령

□ 도로법

-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2013.3.23>
-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1. 제38조의2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83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절
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
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
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1>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2.11.27>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7, 2012.11.27, 2013.3.23>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 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을 제외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

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제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11.27>

제4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관리청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2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③ 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관리청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5항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

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1.27>

-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11.27>
- ⑧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외의 도로의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 및 제7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2.11.27>

제4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3.23>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법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영 제4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2.11.30, 2013.3.23>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제25조(점용료 감면)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페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페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목적
 2. 점용장소와 면적
 3. 점용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도로의 복구방법
- ② 군수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3.12>

④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01.2.24, 2002.5.27, 2005.2.25>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⑤ 삭제 <1999.3.12>

⑥ 삭제 <1999.3.12>

⑦ 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08.3.14>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2008.3.14>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29]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전문개정 2008.12.29]

□ 민법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전문개정 2008.12.29]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9조(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쫓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5.24]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 ③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 의안명 :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3. 미첨부 사유

-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경제건설국 도로과장 홍성수